

2024 객관식세법 (이승철·박지섭 저, 나무경영아카데미) 추록 및 정오표(2)- 4. 2. 현재

세법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1쇄에 반영되어 있는 시행령 초안 다르게 변경된 사항 및 교재 출간 후 발견된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I. 시행령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1쇄에만 반영요망, 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시행령 초안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확정과정에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개정(2024. 7. 1. 시행)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u>1억 400만원</u>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적용시기) 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3. 교재 수정

상기 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62	하12	(2) 폐수배출부담금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2) 폐수배출부담금
1-86	상3	폐수배출부담금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3-20	상10	~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	~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3-159	상9	8,000만원 ~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상13	8,000만원 ~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10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7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3-161	상5	~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	~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상11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11	8,000만원 ~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10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4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하1	~ 8,000만원 ~	~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3-162	상6	공급대가가 8,000만원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하9	~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	~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
3-170	상5	~ 공급대가가 8,000만원 ~	~ 공급대가가 8,000만원(2024. 7. 1.부터는 1억 400만원) ~

II. 교재 오류 수정사항(1쇄에만 반영요망, 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193	하7	③ 한도초과액 : $₩30,000,000 - ₩0 = ₩30,000,000$	③ 한도초과액 : $₩40,000,000 - ₩0 = ₩40,000,000$
2-147	하2	① ₩2,280,000	① ₩2,178,000
2-161	상16	(3) ~ : $₩10,000,000 \times 15\% + ₩2,600,000 \times 30\% = ₩2,280,000$	(3) ~ : $₩10,000,000 \times 15\% + ₩2,260,000 \times 30\% = ₩2,178,000$
2-182	하14	~ 분리과세기타소득(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제외) ~	~ 분리과세기타소득(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포함) ~
2-189	하5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분리과세기타소득 중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5-99	상12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